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들이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준수”란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령”이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 고시 등에서 공정경쟁 촉진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말한다.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추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① 기업 내에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경영방침이 천명되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임직원은 물론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게시물에는 자율준수 필요성에 대한 경영층의 신념과 의지 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

제4조(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① 기업 내에 자율준수관리자를 두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② 임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마찰을 조정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한다.

④ 기업 내에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다른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다면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자율준수 편람 제작) ① 사업자는 임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 또는 게시해야 한다.

② 자율준수 편람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부과하는 제재·벌칙,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 명백한 불법행위 유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자율준수 교육) ① 사업자는 임직원들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입직원들에 대한 기초교육,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내용에는 제5조의 자율준수 편람, 판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관리체계 구축) 사업자는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기록 또는 게시해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 점검) ① 사업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혜택 부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